「츳남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비R&D)사언」 사업화 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2차)

충남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분야인 수소에너지 산업의 역량과 성장잠재력 확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수소 생산-저장·운송-충전-활용 분야의 수요 맞춤형 사업화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 6. 2.

(재)충남테크노파크 워장

(재)충남지역산업진흥원 원장

1. 모집개요

- □ **사 업 명 :** 충남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비R&D) 사업화 지원 사업
- □ **지원목적**: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특화산업(수소에너지) 분야 육성 및 활성화, 우수 기술의 지역 내 사업화 촉진
- □ **지원내용** : 특화산업(수소에너지) 분야 사업화 촉진 위한 시제품 제작, 제품 고도화, 시험분석 및 인증, 특허, 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등 지원 ※ 수출을 위한 사업화 프로그램 신청 기업 우대
- □ 지원기관: (재)충남테크노파크. (재)충남지역산업진흥원
- □ **협약방법**: 3자협약(선정기업, 공급기업, 지원기관)
- □ **지원규모**: 기업당 4천5백만원 이내(프로그램 2개까지 지원 가능)
 - ㅇ 신청기업이 영리기업인 경우 민간부담금으로 지원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매칭해야 하며, 부가세 등은 관련법에 따라 신고 후 신청기업의 별도 자금으로 지출

<사업비 편성 예시>

[단위: 처원]

지원금	민간부담금	총사업비	부가세(별도)
30,000	3,000	33,000	3,300

-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5년 10월 31일(금)까지
- □ **공고 및 접수기간**: 2025년 6월 2일(월) ~ 2025년 6월 23일(월), 18:00까지

2. 지원내용

프로그램	지 원 내 용	지원금액 (1건당)
시제품제작	상용화 목적의 기업 시제품 및 목업 제작비 등 재료비, 외주가공, 금형 제작 분야 소요비용 등 지원	3천만원 이내
제품고도화	특화산업 분야 제품 생산 공정 개선, 품질 및 기능 향상을 위하여 소요 되는 비용 등 지원	5천년천 에테
시험분석	특화산업 분야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성능평가, 시험분석 등 지원	
인증지원	특화산업 분야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인증획득지원	
특허지원	○ 특화산업 분야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특허, 디자인 등 조사/분석, 출원 및 등록 지원	1천5백만원 이내
마케팅	○ 신문, 지하철 및 방송 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광고제작 지원 ○ 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매체(앱, 홈페이지 등) 제작지원	
국내외 전시회	○ 특화산업분야의 유망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시장 창출, 확보 및 활성화 지원	

※ 선정평가를 통해 사업비 차등 지급 및 사업비 과다 책정의 경우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충남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하고, 특화산업(KSIC)에 해당하는 기업(기관)
- o (지원범위) 수소에너지의 생산, 저장·운송, 활용 및 안전 및 인프라 분야 산업

구분	정 의
	○ 접수마감일 기준 충남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보유 기업(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94호'「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변경)」내 충남 지역혁신융복합 단지 지구지정계획의 지구지번 상 사업장 보유
입주 조건	- (예외) 미입주 기업(기관)은 입주확약서 제출로 신청 가능 <u>협약종료일까지 입주 후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으로 증빙 필수(</u>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94호 확인 필수), <u>협약기간 내 미입주 시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 조치</u>
	○소재지의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자),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 등록증 기준 판단, 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소재지 기준
특화 산업	○사업자등록증 종목이 지원범위 업종(KSIC)에 해당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기준으로 특화산업 해당여부 판단

□ 지원분야

o (특화산업: 수소에너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기술을 기반으로 수소생산, 저장·운송, 활용, 안전 및 인프라를 포함한 부품·소재 및 장비산업을 의미

구 분	주요품목 및 내용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기준
	○연료, 폐자원, 물분해 등을 활용한 수소	KSIC	항목명
수소생산	생산 목적 부품소재장비 개발 등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 개질기, 추출기, 수전해 장치 등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수소 및 수소에너지 저장 위한 부품소재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수소저장	·장비·개발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운송시스템	* 센서, 저장용기, 압축기, 벙커링 등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u> </u>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수소운송	○ 수소운송 위한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충전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및 충전	시스템 부품소재 개발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X 0 L	* 압축기, 충전시스템, 수소전용 파이프 등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수소 활용 모빌리티 및 발전 부품·소재· 장비 개발 * 연료전지, 수소가스 터빈, 수소엔진 등 부품소재 등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수소활용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수소 부품소재 시스템 안전·표준화, 벙커링·시스템 엔지니어링 개발 등 관련 기술 개발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안전 및 인프라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 사고예방기술, 품질 및 측정 기술 등	35119	기타 발전업
	12 % 10 12 0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 지원 제외 대상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상 지원제외 대상>

- ① 신청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 ③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④ 기업의 부도
- ⑤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⑥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법원의 인기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⑧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⑨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4. 평가기준 및 우대가점

□ 평가방법

o 선정평가는 평가위원 5명 내외로 구성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거 서면 (대면)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평점 70점 이상인 지원 프로그램을 선정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지원 필요성	30	○사업추진 목적 및 목표의 타당성 사업추진 필요성 등
지원 내용의 타당성	20	○ 과업내용 적절성 및 사업비 집행계획의 구체성 등
계획의 구체성	25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등
기대효과	25	○성과목표에 따른 결과물의 적정성 등
가점 [*]	5(+3)	○ 가점항목은 증빙자료 제출건에 한함
총점	105(+3)	

※ 가점: 최대 5점(① ~ ④ 해당)

No.	우대 항목	가점	증빙
1	충남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3	협약서
2	전년도 충남테크노파크 공용장비 활용 기업	2	세금계산서
3	충남 연구장비 시스템(CES) 가입	1	가입확인증명서
4	충남지역 내 공급기관	1	사업자등록증
별도 가산	전년도 수출실적 보유 기업	3	수출실적증명서

5. 지원절차

구 분	추진내용	업무주관
공고 및 접수 (6월)	○ 수혜기업 모집 공고(충남TP)○ 충남지역혁신클러스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접수	- 충남테크노파크/충남지역산업진흥원
Û		
참여제한요건 검토 (6월)	수혜기업 참여제한 요건 검토(기관 제외)	- 충남테크노파크/충남지역산업진흥원
<u> </u>		

선정(대면)평가 ○ 위원구성: 지역내·외 산업분야 전문가. - 충남테크노파크/충남지역산업진흥원 (6월~7월 초) 지원유형/프로그램별 전문가 - 신청기업 - 평가위원 Д ○ 선정결과통보(종합평가의견 포함) 과제선정 및 협약 - 충남테크노파크/충남지역산업진흥원 ○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7월) - 선정기업, 공급기업 ○ 지원기관, 수혜기업, 공급기업 간 협약체결 Ţ 중간점검 및 - 충남테크노파크/충남지역산업진흥원 ○ 과제수행 모니터링 및 진도점검 모니터링(9월) - 수혜기업 - 평가위원(필요시) Д 결과보고(10월) ○ 사업화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 수혜기업 Д - 충남테크노파크/충남지역산업진흥원 최종평가(11월) ○ 결과보고서에 대한 적절성 평가 - 평가위원 Л ○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및 최종평가 결과 지원금 지급(12월) - 충남테크노파크/충남지역산업진흥원 통과된 기업에 기업지원비 지급

※ 추진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서 접수

Д

사후관리

□ **접수기간** : 2025년 6월 2일(월) ~ 2025년 6월 23일(월), 18:00까지 접수 완료분

- 충남테크노파크/충남지역산업진흥원

- 수혜기업

□ 접수처 : 온라인 접수

충남지역혁신클러스터 홈페이지(www.cn-h2cluster.com) 지원서비스 – 사업공고 - 신청하기

□ 접수방법

- ①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서류 접수
- ② 제출서류 연번 순으로 압축하여 파일(zip) 제출

○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 수혜기업별 성과관리 및 증빙자료

(매출확인서, 계약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 파일명: 기업명_2025 신청 프로그램명_신청서류 ※ 홈페이지 제출 문제 발생 시, 담당자 사전 연락 필수

□ 문의처

지원기관	부서명	담당자	전 화	이메일
(재)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 본 부	박은경 과장	041-589-0110	pek@ctp.or.kr
(재)충남지역산업진흥원	평가팀	이종삼 책임	041-415-2166	neo612@riia.or.kr

□ 제출서류

연		제출기관		ᅰᄎ
번	제 출 서 류	신청 기업	공급 기업	제출 부수
1	신청서 제출 공문	0		1부
2	신청서 및 지원 프로그램별 세부계획서【서식 1, 1-1】 (예 특허+마케팅 신청시 특허지원 및 마케팅 세부계획서 각 1부 제출)	0		각 1부
3	참여의사 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2】	0		1부
4	지역혁신클러스터(융복합단지) 내 사업장 이전 확약서【서식 3】	0		해당 시
5	사업자등록증	0	0	각 1부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0	0	각 1부
7	최근 3년('22년 ~ '24년) 결산 재무제표: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24년 자료 제출 불가 시 '21 ~ '23년 자료 첨부	0	0	각 1부
8	4대 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2024년, 2025년 사업공고 시작일 이후 기준)	0		1부
9	국세 납세증명서	0	0	각 1부
10	지방세 납세증명서	0	0	각 1부
11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서식 4】※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0		1부
12	청렴서약서【서식 5】	0		1부
13	신청기업 자체 점검표【서식 6】	0		1부
14	민간부담금 출자확약서【서식 7】	0		1부
15	우대가점 증빙서류	0		해당 시

7. 유의사항

- ㅇ 지원 프로그램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등 작성 후 제출
- * 세부 프로그램 중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 2개까지 지원 가능하며, 개별 프로그램별 별도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 ㅇ 신청기업(수혜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 구성/협약 체결 후 지원
- ㅇ 신청기업(수혜기업) 단독 신청 시 지원기관에서 공급기업과 중개 가능
- 총소요 예산이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신청 기업(수혜기업)에서 부담
-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
- 이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지원*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중복지원은 최근 2년 이내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
- ㅇ 지원금액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충남)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거점 현황

유 형	위 치	면 적 (km²)
산업단지 (국가산단)	석문국가산단	4.109
산업단지 (일반산단)	탕정테크노산업단지(조성중), 탕정일반산업단지(조성중), 아산인주일반산업단지, 천안2일반산업단지, 예당일반산업단지,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서산오토밸리일반산업단지, 송산2일반산업단지	9.206
산업단지 (농공단지)	명천자동차전문농공단지, 서산성연농공단지	0.697
산업단지 (첨단산단)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중)	0.640
규제자유특구	송산2일반산업단지	(0.008)
외국인투자지역	아산인주외국인투자지역	0.159
연구개발특구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조성중)	0.498
지식산업센터	충남지식산업센터, 이산지식산업센터(조성중)	(0.017)
	합 계	15.309

^{*}입주조건 확인 시 상기 거점 중 일부 구역은 충남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붙임3. 충남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94)」의 지번 확인 필수